

원전메이커 소송의 현재 상황

2015년 11월 14일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도쿄지방법원(법원) 103호 법정에서, 제2회 구두변론기일이 행하여졌습니다.

1. 서면 등의 제출에 대해서

원고에게서 제2준비서면을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만, 본(本) 기일에서는 구두로의 설명 등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은 다음 번 기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또 증거에 대해서도 원고는 갑 16~42호증(甲 16~42 號證)을, 피고 GE는 을 1호증(乙 1 號證)을 제출했습니다만, 증거 조사도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2. 기일의 내용에 대해서

본 기일 전에, 변호인단은 제2준비서면 요지를 구두로 40분~60분간 설명하는 것을 재판소에 요구하고, 그것이 구두주의에 근거하는 원고의 권리라는 취지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재판소는 우선 진행에 관한 규칙을 재판소 및 당사자와 공유하고 싶다고 하여, 이번에는 구두설명 등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일에서는 피고 GE 대리인이 "법률론만으로 기각할 수 있다." "3회로 종결해야 한다."고 집요(執拗)하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가와이(河合)변호사가 본 소송의 취지, 중요성을 냉정하고 결연(決然)한 태도로 설명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중, 당 변호인단이 퇴출하고 협의를 하는 장면을 거쳐, 이하와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다음회 기일에 제2준비서면 요지 등을 구두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40분간).

○ 파워포인트 원고는 준비서면으로서 기한까지 제출한다.

※ 제3준비서면에서는 원자로(原子爐)의 결함을 주장하지만, 다음회 기일까지 제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주장의 일부를 제출하고 주된 설명은 다다음회 기일로 한다.

○ 이후의 프로젝터 사용에 대해서는, 때마다 재판소가 판단한다.

다음회 기일: 2016년 1월 27일(수) 오전 10시~ (도쿄지방법원 101호 법정)

다다음회 기일: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도쿄지방법원 103호 법정)

다음회 이후도, 점점 많은 원고, 지원자의 출석,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기일 중에서는 본인소송(선정당사자 소송)의 진행과 일부 원고의 소송철회 등에 관한 확인도 행해졌습니다.

이상

(변호인단사무국 데라다 노부코(寺田伸子))